

- 2020년도 국가공무원 5·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-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

I 편의지원 대상

- 2020년도 국가공무원 5·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, 원서접수 마감일(2020.6.23.) 현재까지
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로서
 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
- 기타 특수·중복장애,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

II 신청 절차

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
편의제공 내용 확인

· 원서접수 시 게시된 **장애유형별** 편의제공 안내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**해당사항 확인**
(p.3~6의 장애유형(정도), 편의지원 내용, 증빙서류 확인)

장애인 편의제공 신청

·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**장애유형 및 정도**를 선택한 후 제공받고자 하는 **편의지원 항목 체크**
(하단의 입력란에 구체적인 장애유형, 편의신청 내용, 필요성 기재)

소정의 기간 내에
증빙서류 제출
(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)

·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**증빙서류 원본을 경력채용과로 등기우편 제출**

※ 유형별 증빙서류는 「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」 참고

* **제출기한: ~ 2020. 6. 26.(금)**(당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)

* **제출주소: [30102]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(어진동)**

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담당자 앞

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
여부 게시

· 보건복지부·국가보훈처 조회 및 증빙서류 확인
·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제공여부 게시 및 세부사항 안내

- p.3~6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(정도)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p.3~6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의사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)
- ※ 논문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관련 편의지원은 선택형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·접수합니다.
-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 S/W탑재 컴퓨터, 점자문제지,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응시자는 신청화면 하단의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,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「의료법」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. (p.6 [참고]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)
- ※ 다만, 임신부의 경우에는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.
- ※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여부(소재지)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→ [병원·약국 찾기]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
(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)
- 사전신청자의 경우 승인내역으로 편의지원이 제공됩니다.
- ※ 사전신청내역은 수정이 불가하므로, 신청내역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삭제 후 원서접수 편의지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**(삭제 후 신청하는 편의지원은 당해 시험에 한하여 제공)**
-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,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(044-201-8245, 837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IV

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제공 내역

1 지체장애인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 (각1부)	비고
상지	공통	○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(2종 중 택1) * A3표기형, A3기입형 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○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
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	○ 시험시간 1.5배 연장 * 1교시 175분 / 2,3교시 135분 ○ 답안지 대필	-	기존 1~3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○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-	기존 4~6급
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/ 심하지 않은 사람	○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○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기존 1~6급

2 뇌병변장애인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 (각1부)	비고
뇌병변	공통	○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○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○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
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	○ 시험시간 1.5배 연장 * 1교시 175분 / 2,3교시 135분	-	기존 1~3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○ 답안지 대필	의사진단서	기존 4~6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○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-	

3 시각장애인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 (각1부)	비고
시각	공통	○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(2종 중 택1) * A3표기형, A3기입형 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-	
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	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	의사진단서	기존 1~2급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 을 인정받은 사람		기존 3급 2호
		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 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로 남은 사람	-	기존 3급 1,2호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의사진단서	기존 4급 2호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-	
		좋은 눈의 시력이 0.2 이하인 사람	-	기존 4,5급 1호
		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의사진단서	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.3이하
		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	-	기존 5급 2호, 6급

4 청각장애인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 (각1부)	비고
청각 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/ 심하지 않은 사람	○ 수화통역사 배치 ○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-	기존 2~6급

5 기타 편의지원이 필요한 경우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 (각1부)	비고
기타	특수 및 중복장애 및 일시적 신체장애	○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	검토 후 안내	
	임신부	○ 높낮이조절책상 ○ 시험중화장실 사용 ○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 인서	
	과민성 대장·방광증후군	○ 시험중화장실 사용 ○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의사 진단서	

※ 참고사항

- * 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(14point), 150%(18point)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
- * 확대답안지 :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
- * 축소문제지 : A4 규격의 82%(10point)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

- ※ 확대문제지 중 150%(18point) 선택 시 A2 규격으로 제공됩니다.
- ※ 점자문제지는 개정된 점자규정('17.3.28.시행)을 반영하여 제공됩니다.
- ※ 과학, 제2외국어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 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으며, 수학은 점자문제지만 제공
- ※ 음성지원 s/w 탑재 컴퓨터는 windows 10으로 제공됩니다.

참고

의사진단서 (소견서) 발급 시 유의사항

- 발급기관: 「의료법」제3조에 의한 **종합병원 (또는 상급종합병원)**
- ※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, **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**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 - ※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 - ※ 다만, 임신부의 경우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**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**로 증빙 가능
- 발급일자: 해당 시험 **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(원본)**

구 분	응시원서 접수마감일	진단서 발급일
국가공무원 5·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	2020년 6월 23일	2018년 6월 24일 이후

- 의사진단서 발급 시 **반드시 포함**되어야 할 내용(아래 3가지)

-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* 시각장애의 경우, 시력 또는/및 시야값 명기
 -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 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 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 예시)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컴퓨터, 점자문제지를 신청할 경우
 ⇒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컴퓨터, 점자문제지
 - 원서접수 시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
 - 임신부 응시자의 경우에도 임신주수, 신청할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
- < 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 >

장애유형 및 정도		예 시	* ①~③ 반드시 기재
시 각 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자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- 시력/시야: 좋은 눈 0.07,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됨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 컴퓨터, 점자문제지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- 시력: 나쁜 눈 0.02이하, 좋은 눈 교정시력 0.3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	
뇌병변 장애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- 증상: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	
기 타	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 - 증상: 눈의 운동장애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	

* **시험시간 연장, 대필 등**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**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**(소견서 불인정)